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휴가사용촉진조치 세부처리기준과 같이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 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82-3)

Q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A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Q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철거된 경우는 3일 이내 재공급해 드립니다.

3)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데 전기를 끊어주세요?

전기는 생활의 필수적인 것으로 전기사용 계약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전기요금 납부를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31)

1) 출장을 갔다오니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몇 달 안내면 끊나요? 요금을 낼테니 빨리 이어주나요?

전기요금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일 7일 전에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전기사용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객요청이나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 공급이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해

지사유를 해소하고 재사용 신청할 경우 미납요금과 재공급수수료,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등을 납부하면 다시 공급을 하여 드립니다.

2) 전기요금을 내면 언제 이어주나요?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재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계량기가 철거되지 않는 상태면 바로 공급해 드리며, 계량기가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연골의 일부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의 손상이 수술로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코가 시간이 지나도 변형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성형을 하는 것은 이제 두경부외과인 이비인후과의 영역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 나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첨단 의료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형의 방향은 피부 표피만을 바꾸는 시술이 아닌 기능의 보전과 향상,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작은 결점들을 안전하고 기능적인 분과별 전문 성형수술을 통해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아 진정한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문의전화 : 031-539-9248)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가?(2)

코성형도 마찬가지로 이전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며 코안의 연골들의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코가 못생겼다는 것은 외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코를 구성하는 많은 작은 연골들과 그 연골을 지지해주는 연부조직, 그리고 비골의 문제를 상기한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코 성형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시행하

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침샘 이상이나 턱관절의 통증, 저각근과 그 주위 구조물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며, 안면부 근육의 마비 등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저각근의 비후로 생긴 사각턱을 보톡스로 치료하고, 안면부의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말미암은 얼굴주름과 팔자 주름의 개선을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으로 교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코, 삐뚤어진 코, 통통한 코를 필러로 보충하고 일부 과도한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주장의 가능여부】

Q 저는 2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 丙이 나타나 甲의 상속인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甲은 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甲의 외아들인 乙은 객지에서 살다가 최근에 甲병의로 된 위 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丙에게 매도하였더니, 甲이 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으니 매매계약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되어 그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으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A 민법 제 245조 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시효취득 전·후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 관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93.5.25. 92다52764,52771), 취득시효 만료 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의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9.2.23. 98다59132),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2.12.11. 92다9968,9975), 나아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

자의 소유권이전등기무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4.4.12. 93다50666), 다만, 새로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시효취득사실을 알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이므로 시효취득자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6.30. 94다52416)"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3자인 丙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甲의 상속인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현재는 이미 丙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이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甲의 상속인 乙로서는 귀하의 시효취득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대법원 1994.4.12. 93다60779, 1995.7.11. 94다5509).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 성보호법】중 청소년대상 신고의무제도란?

A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하여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법률(2008. 2. 4.시행)은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교육시설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의료기관(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청소년시설(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아동·장애인·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2008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

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
3.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

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4.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봄.

5.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 부과할 사유가 적진 사업 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함.

6.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금인원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내일도 사람이 그림다
손영배
본일엔 천국가서 / 세상이 그림의 천국을 그려 / 죽어 그림도 별엔 새 날 그리며 환은차
또한 죽은후에 천국 추후엔 / 양해는 말코를 내뿜어 / 미로로 의지하여 / 내 거
있을을 노래한다 / 지금도 사랑을 그리며한다

손영배 詩人 「내일도 사람이 그림다」 퇴역 및 출판기념행사



초대의 글
이제 군문(軍門)을 떠나 짧은 식견의 글이나마 남기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설계하는 귀한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몇 날 몇 밤을 자의반 타의반 숙고의 반성과 자문자답을 해 오면서 시집 한 권으로 군문의 하직인사를 해야 할 소박한 마음을 담아 오늘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편의 글 중 단 한편이라도 독자의 생각에 감동을 준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부족하오나 퇴역 및 출판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격려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저자 손영배 올림

동트는 아침으로
푸른 수레를 끌고 가야 할
당신의 내일도
사랑과 손잡고 이별길을 오릅니다
세상의 박한 이문을 손에 들고
동사의 물감을 찍어
사랑의 벽에 그림을 그리자던
당신의 마당에는
지금 무지개가 핏니다 (-축시중에서-)

- * 일 시 : 2008년 2월 29일(금) 오후 4~6시
* 부대행사 : 오후 4시(3739부대 연병장)
* 출판기념행사 : 오후 5시(운천버스 종점앞 장원회관)